

제278회 임시회
2009. 3. 27(금)

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


건설문화위원회

심사보고서

2009. 3. 27.

건설문화위원회

1. 심사 경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9년 3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0일

상정일자 :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9. 3. 24 :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발전국장 박범수)

제안 이유

○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.

□ 주요 내용

-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문화전문위원 윤영해)

-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
-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참고로 강원, 전남, 전북, 경북, 인천 등 5개 시도 제정운영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 결론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 등"이라 한다)을 표시 또는 설치(이하 "표시"라 한다)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,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소위원회 설치 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(이하 "소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
 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
-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 - ④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·전문가·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서식】

옥외광고물등 표시(변경)허가 및 신고대장

364mm×257mm(보존용지(1종) 70g/m²)

관 계 법령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제7조 (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) ①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1.7.24, 2007.12.21>
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7조 (허가 및 신고절차등)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(이하 "광고물등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)를 말하며,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·군·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1993.2.24, 1997.2.6, 1999.2.26, 2001.11.22, 2005.6.23, 2005.6.30>

1.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
 2. 광고물등의 형상·규격·재료·구조·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
 3.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4.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·군·구조례로 정하는 서류
-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9조제1항부

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은 "시·도지사"로, "시·군·구조례"는 "시·도조례"로 본다. <신설 2008.7.9>

제33조 (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)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에 두는 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 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당해 시·군·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(담당국장이 없는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 <개정 1997.2.6, 2001.11.22, 2005.6.23, 2008.7.9>

②위원은 관계공무원,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. <개정 1997.2.6, 2001.11.22, 2005.6.23>

③위원장·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<신설 1997.2.6>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시·군·구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시·군·구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01.11.22, 2008.7.9>

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08.7.9>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08.7.9>

⑧ 시·군·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08.7.9>

⑨ 시·군·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 <신설 2008.7.9>

⑩ 시·군·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08.7.9>

⑪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에 두는 위원회(이하 "시·도 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

경우 "시·군·구"는 "시·도"로, "시·군·구조례"는 "시·도조례"로 본다.
 <신설 2008.7.9>

제34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시·군·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·군·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
2. 시·군·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·군·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

② 시·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관할 시·군·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시·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3.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
4.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[전문개정 2008.7.9]

제36조 (수당과 여비) 시·군·구 위원회, 시·도 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7.9>